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. 3. 29 선고 2021가단84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2. 3. 15.

판 결 선 고 2022. 3. 29.

주 문

1.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,
가. E과 피고 사이에 2021. 2. 2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,
가. E과 피고 사이에 2021. 2. 2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,625,000원의 범위 내에서
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원고에게 6,62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
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조인

별지